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19일

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“지방소득세 종업원분”이 “주민세 종업원분”으로 개편 (안 제8조의2, 제8조의3)
 - 세목의 명칭 변경으로 조문정비
-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규정 (안 제9조)
 -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
-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규정 (안 제24조)
 -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세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8조의2, 제8조의3에서는 “지방소득세 종업원분”이 “주민세 종업원분”으로 세목의 명칭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고,
안 제9조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였으며,
안 제24조에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,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